

2026 코어 세법학 추록

유은종 지음 | JDI BOOKS 출간
2026년 5월 14일 발행

- 이 추록은 『2026 코어 세법학』 제12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 - 코어 세법학 제 12판 제1쇄(유은종 지, 2026.3.20.퍼냄)
- 이 추록은 출간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-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
 - 2026.2.28.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영
 - 2026.3.3.에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
 -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(2026.4.21.개정)

1.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p.30	오른쪽 상 4	법정기일	법정기일 전
p.51	오른쪽 상 4	② 위 ①에도	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
p.98	왼쪽 상 1	발행한	발생한
p.164	왼쪽 상 13	소요경비를	소요경비를
p.236	왼쪽 하 4	증여재산가액	사전증여재산가액(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)
p.255	오른쪽 하 2	㉠ 사업부분별로	㉠ 사업부문별로
p.260	오른쪽 하 6	증여자간	증여자의
p.268	왼쪽 상 11	㉞ 상속인	㉞ 출연자
p.290	왼쪽 하 10	받기로 한 때	받기로 한 때, 다만,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
p.294	오른쪽 상 16	⑧ 공동주택 어린이집의	⑧ 공동주택 어린이집의
p.318	왼쪽 하 5	① 면세사업 관련	① 면세사업 등 관련
p.323	오른쪽 하 2	과다기재	과다기재
p.325	왼쪽 상 16	확정신고기간	확정신고기한

p.441	왼쪽 하 10, 하7, 하 2	청년등상시근로자	(→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청년등 의 상시근로자 로 변경) 청년등 의 상시근로자
	오른쪽 상 1, 상 4, 상 8, 상 11, 상 12, 상 15, 상 16, 상 19		
p.442	왼쪽 상 8, 상 16		
	왼쪽 하 9		
p.449	오른쪽 상 1~2	④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 야 함	삭제
p.454	왼쪽 상 5~6	을 40%(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벤처지주회사 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20%) 미만으로	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
p.456	왼쪽 상 11	자산증여액을	자산증여액(장부가액)을
	오른쪽 상 16	산입	산입. 다만, 위 (1) ②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감소액을 익금 에 산입
p.496	왼쪽 상 2	양도 —	양도 하는 경우
p.517	왼쪽 하 5	① 증여재산가액	① 증여재산가액(장부가액)

◆ p.201 오른쪽 상 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- *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%^㉓ 및 ④의 경우 30%)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위 1.의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함

◆ p.441 오른쪽 하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*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설계

		공제액(단위:만원)			
		중소(3년)		중견(3년)	대(2년)
		수도권	지방		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 단절 근로자 등	1년차	700	1,000	500	300
	2년차	1,600	1,900	900	500
	3년차	1,700	2,000	900	-
그 외 상시 근로자	1년차	400	700	300	-
	2년차	900	1,200	500	-
	3년차	1,000	1,300	500	-

◆ p.468 오른쪽 상 3행을 왼쪽 하 15행 아래로 이동해주세요.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p.468	오른쪽 상 3 ⇒ 왼쪽 하 15	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	2) 감면대상 농지의 요건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

2.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개정에 따른 정오사항(2026.4.30. 개정)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p.337	오른쪽 상 17~18	2026년 4월 30일까지는 247.5원/kg으로 한다.	2026년 6월 30일까지는 206원/kg으로 한다.

- 아래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.

[참고] 개정이유 :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'2026년 4월 30일까지'에서 '2026년 6월 30일까지'로 2개월 연장하되,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.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정오사항(2026.4.21. 개정)

❑ p.75 왼쪽 하 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【세부】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

1. 익금불산입 특례

내국법인(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)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2026.1.1.부터 2026.12.31.까지 받은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(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)을 적용할 때 다음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
$$\text{익금불산입액} = \left[\text{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} - \text{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} \times \frac{\text{해당 파출자법인의 주주등의 세법상 장부가액 적수}}{\text{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}} \right] \times 100\%$$

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함

2. 배당 가능한 유보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의 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

위 3)의 ①에도 불구하고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% 이하인 특정외국법인)으로부터 2026.1.1.부터 2026.12.31.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

❖ 자녀세액공제 :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p.184	왼쪽 상 14	8세 이상의	13세 이상의

p.184 왼쪽 하 11행과 하 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

- ① 2026.1.1.부터 2026.12.31.까지의 과세기간분 : 9세 이상
- ② 2027.1.1.부터 2027.12.31.까지의 과세기간분 : 10세 이상
- ③ 2028.1.1.부터 2028.12.31.까지의 과세기간분 : 11세 이상
- ④ 2029.1.1.부터 2029.12.31.까지의 과세기간분 : 12세 이상

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2026년 과세기간부터 2029년 과세기간까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

❑ p.435 왼쪽 하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3.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(2026.4.21.신설)

취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함

(1)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

내국법인(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)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(이익의 배당금, 잉여금의 분배금 및 의제 배당금액)을 2026.1.1.부터 2026.12.31.까지 받은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(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)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
(2) 배당 가능한 유보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

「법인세법」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% 이하인 특정외국법인)으로부터 2026.1.1.부터 2026.12.31.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
(3) 차입금 이자의 익금불산입 제외

위 (1) 및 (2)을 적용할 때, 내국법인이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
$$\text{익금불산입액} = \left[\text{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} - \text{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} \times \frac{\text{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세법상 장부가액 적수}}{\text{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}} \right] \times 100\%$$

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함

❑ p.482 오른쪽 하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17.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(2026.4.21.신설)

(1) 적용 요건

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국외상장주식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.12.31.까지 양도하여야 함

- ① 거주자가 2025.12.23.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할 것
- ② 위 ①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한 사실이 없었 것

(2)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

위 (1)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함

$$\text{공제금액} = \text{①} \times \text{②}$$

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

- ㉠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.1.1.부터 2026.5.31.까지의 기간에 양도(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함. 이하에서 같음)한 경우 : 양도소득금액의 100%
- ㉡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.6.1.부터 2026.7.31.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: 양도소득금액의 80%
- ㉢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.8.1.부터 2026.12.31.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: 양도소득금액의 50%

② 거주자가 2026.1.1.부터 2026.12.31.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국외상장주식 대체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

(3) 국내시장복귀계좌(RIA)

“국내시장복귀계좌”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함

- ① 납입한도가 5,000만원 이내일 것
- ② 다음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
 - ㉠ 집합투자재산의 80%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 - ㉡ 주권상장법인의 주식
 - ㉢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

(4) 사후관리(양도소득세 납부)

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

(5) 이자상당가산액 납부

거주자가 위 (4)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

18.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(2026.4.21.신설)

(1) 적용 요건 및 공제금액의 계산

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2026.12.31.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의 금액을 아래 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함

- ① 거주자가 2025.12.23.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5%에 상응하는 금액
- ② 국외상장주식을 2026.1.1.부터 2026.12.31.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

(2) 파생상품 양도소득 비과세

거주자가 2026.12.31.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「소득세법」상 파생상품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